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에 따른 동의안

1. 제안이유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사용 시 지방재정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8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어 무상사용 허가토록 되어 있으므로
- 동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광역시서구협의회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음

2. 주요골자

○ 무상사용허가 대상 재산

(단위 : ㎡)

위 치	사용재산	사용면적	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	사용허가 신청자
농성동 299 서구청부지 내	토지	165	서구선거관리위원회	2003. 2. 2 ~ 2006. 2. 1	서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농성동 299 서구청 본관 3층	건물	31.3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구협의회 사무실	2003. 2. 2 ~ 2006. 2. 1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광주광역시 서구 협의회장

3. 검토의견

이번 안건은 국가기관인 서구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광역시서구협의회가 신청한 서구청 내의 토지와 건물의 무상사용에 대한 동의 안건입니다.

서구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광역시서구협의회가 신청한 서구청 내의 토지와 건물은 서구청의 공유재산인 행정재산입니다.

자치단체의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에 대해서 행정재산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 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하지만 국가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사용·수익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고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동의안의 경우 의회의 동의를 제외한다면 무상사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국민투표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평화통일의 대 국민적 홍보 및 지역주민의 통일문제 의견수렴을 위한 자문기관으로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지역협의회 사무실은 국가기관이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